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

시행 : 2024. 03. 01.

제55조(학위지도교수)

-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에 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-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,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·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,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시행일 : 2023. 09. 01.

제20조(학위지도교수)

-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
-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,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, 학과간협동과정, 학·연·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.

일반대학원 내규

시행 : 2024. 03. 01.

제12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

제53조(학위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)

- 학위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,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[별표2]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형국책과제 참여생, 예약입학 및 학·석사연계전형,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.
- [별표2]의 연구실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예외조치할 수 있다.
-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위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4조(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)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해

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5조(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)

- ①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② 고향명예교수는 고향명예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내에 공동학위지도교수로 지도학생을 신규 배정할 수 있다.

제56조(학위지도교수의 변경)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변경사유"라 한다)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- 1. 퇴직한 경우
- 2.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
- 3.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
- 4. 기타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57조(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)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[별표2]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

구분	자격기준
교내 학위지도교수	1. 인문사회계열 :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100점 이상인 자 2. 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 :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300점 이상인 자(임상교수제외) 3. 예체능계열·시,소설 등 창작분야 :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100점 이상인 자 * 본 자격기준의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「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」을 적용함 * 직전년도 산정기간 : 해당년도 1. 1.~12. 31. * 직전년도 3년 기간에서 연구년 및 휴직 기간은 제외 함 * 임용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임용자는 재직 기간의 연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 * 고향명예교수는 본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
외부 공동지도교수	학·연·산협동과정, KHU-KIST융합과학기술학과 협약기관의 박사학위소지자